

기금평가 연속토론회

고용보험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 일 시 | 2016년 10월19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회 순 ————■

사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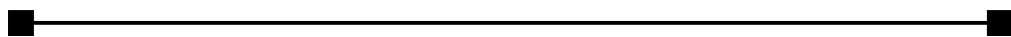
- 오 문 성 (한양여대 교수)

패 널 토 론

- 김 용 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이 승 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상 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질의·응답

폐 회



■————— 목 차 —————■

패 널 토 론

고용보험기금 재정 현황과 증가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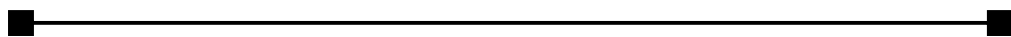
- 김 용 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고용보험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 이 승 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합리적 고용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경영계 제언

- 이 상 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기금평가 연속토론회>
고용보험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패널토론

고용보험기금 재정 현황과 증가요인

김 용 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2015년 말 정부가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사회보험 재정은 중장기적으로 불안하다. 국민건강보험은 2025년, 장기요양보험은 2028년, 사학연금은 2042년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연금 역시 2060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사실상 적립기금 없이 당 연도에 필요한 지출소요를 그해의 재정수입으로 조달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됐고, 고용보험도 급여지출이 계속 늘고 있고, 산재보험의 연금급여 지출도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험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불안정한 것은 근로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개발연대에 생산의 중심축이었던 베이비붐세대는 본격 은퇴해 피부양 연령층으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근로세대는 초저출산 현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계층 간 소득이전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재정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사 위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해 국민연금에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했고, 공무원연금 등은 이미 4차례의 연금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도 2000년의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급여지출 증가에 상응해 보험료 부담을 수지균등 원칙하에서 조절함으로써 비용부담을 감소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해 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이런 원칙하에 재정을 운용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관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인구적 요인 외에도 저성장, 저금리 등 경제적 환경마저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재정위기에 대한 긴장의 끈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비상

시 사회보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도 적자 상태로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보험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제도별로 분리 운영돼 왔던 사회보험 관리의 통합성을 강화, 1차적으로 자산관리와 재정전망에 있어서 정보교류와 업무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공관리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미래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각각 고유의 목적과 기능이 있고, 소관 부처와 관리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통합관리 방침이 제도별 자율적 책임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각종 경제적·사회적 위험요소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미래의 국민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현재의 근심 걱정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고용보험은 적립기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출 증가요인이 늘어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기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 중

【표】 고용보험 재정현황

(단위 :백만 원)

		수입합계	고용보험료	지출합계	보험사업비	누적적립금
2010년	고안+직능사업	1,501,839	1,501,839	1,823,915	1,823,915	2676553
	실업급여사업	2,716,552	2,716,552	4,117,101	4,117,101	2351015
	계	4,218,391	4,218,391	5,941,016	5,941,016	5027568
2011년	고안+직능사업	1,648,941	1,648,941	1,722,566	1,722,566	2963547
	실업급여사업	3,395,729	3,395,729	4,132,290	4,132,290	1737262
	계	5,044,670	5,044,670	5,854,856	5,854,856	4,700,809
2012년	고안+직능사업	2,023,260	2,023,260	1,539,855	1,539,855	3,608,008
	실업급여사업	4,275,077	4,275,077	4,287,700	4,287,700	1,722,177
	계	6298337	6,298,337	5,827,555	5,827,555	5,330,185
2013년	고안+직능사업	2,117,924	2,117,924	1,828,647	1,828,647	3,916,083
	실업급여사업	4,836,299	4,836,299	4,549,368	4,549,368	2,038,543
	계	6,954,223	6,954,223	6,378,015	6,378,015	5,954,626
2014년	고안+직능사업	2,275,435	2,275,435	1,990,102	1,990,102	4,385,764
	실업급여사업	5,732,553	5,732,553	4,903,470	4,903,470	2,931,317
	계	8,007,988	8,007,988	6,893,572	6,893,572	7,317,081
2015년	고안+직능사업	2,414,538	2,414,538	2,578,696	2,578,696	4,428,135
	실업급여사업	6,152,648	6,152,648	5,441,542	5,441,542	3,760,021
	계	8,567,186	8,567,186	8,020,238	8,020,238	8,188,156

※ 고용보험료 현황 : 실업급여 1.3% + 고안직능 (0.25~0.85%)

* 실업급여 요율(%): ('95년) 0.6 → ('99년) 1.0 → ('03년) 0.9 → ('11년) 1.1 → ('13년) 1.3

↳ 근로자사업주 각 0.65%

* 고안직능 요율(%): ('95년) 0.3~0.7 → ('99년) 0.4~1.0 → ('03년~) 0.25~0.85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65%	0.6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실업기금)의 법정적립금은 해당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미만'임

□ 고용보험기금 중 모성보호급여 지출 비중 증가

□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급여 지출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단위: %, 억원)

구분	실업급여 계정 총지출	모성보호급여총지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일반회계 전입금	
		모성보호 급여 중 비중	실업급여 중 비중	산전후휴가 급여 중 비중	모성보호 급여 중 비중	육아휴직 급여 중 비중	모성보호 급여 중 비중	일반회계 전입금	모성보호 급여대비 비율
'10	41,585	3,707	8.9	1,926	51.9	1,781	48.1	100	2.7
'11	41,876	5,092	12.2	2,329	45.7	2,736	54.3	100	2.0
'12	13,860	6,004	13.7	2,419	40.3	3,585	59.7	150	2.5
'13	46,057	6,569	14.3	2,351	35.8	4,218	64.2	250	3.8
'14	49,639	7,401	14.9	2,368	32.0	5,032	68.0	350	5.0
'15	54,978	8,859	16.1	2,590	29.2	6,269	70.8	700	7.9

□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관된 사업

2015년 기준	
사업명	예산액
중장년취업지원	87
중소기업청년인턴제	782
청년취업인턴지원	171
고용센터인력지원	44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6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153
합계	1695

(단위: 억 원)

□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 전망

- 구직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인상
- 구직급여 상한 및 하한 조정(상한액 4→5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90→80%로 조정)
- 구직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 연장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고용보험 부담금 (25%)

고용보험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이 승 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지급 문제

- 현행 고용보험 내 모성보호 급여 확대를 이를 지급하는 현행 재원구조의 불합리성이 고착화될 우려가 현실화
 - <고용보험의 사업 목적>은 고용창출·조정·촉진 지원, 고용안정사업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구직활동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임. 그런데, 현재 모성보호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출, 도입시 건강보험 재정 불안에 따른 임기응변적인 결정으로 모성보호 급여의 성격과 고용보험의 목적은 불일치됨.¹⁾
- 이미 모성보호 급여 지출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안정성이 문제된 상황에서 추가 지출의 확대는 기금의 부실화할 우려가 큼.²⁾
 - 2015년 실업급여계정의 적립배율은 0.69로 법정 적립배율(1.5~2.0)에 비추어 재정 안정성이 낮으며, 최근 육아휴직 이용의 급증으로 2015년 현재 실업급여계정 중 전체 모성보호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6.2%(8,859억원)까지 증가해, 현행 급여 수준 유지에도 기금에 많은 부담이 됨.

1) 2001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부대결의’를 통해 출산전후 휴가급여 비용을 정부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결의, 아직도 미이행됨.

2) 모성보호급여 대비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 : ‘10년 2.7%(100억)→ ‘11년 2.0% (100억원)→ ‘12년 2.5%(150억)→ ‘13년 3.8%(250억)→ ‘14년 4.7%(350억)→ ‘15년 7.9% (700억)→ ‘16년 7.5%(700억)

【표】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 현황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입 ㉠	22,454	25,412	26,063	28,628	29,938	29,786	35,738	43,709	49,220	58,566	63,415
지출 ㉡	19,054	22,842	27,132	32,290	45,743	41,585	41,876	43,860	46,057	49,639	54,978
모성보호 지출㉢ (㉢/㉡*100)	743 (3.9%)	1,254 (5.5%)	1,934 (7.1%)	2,651 (8.2%)	3,182 (7.0%)	3,707 (8.9%)	5,092 (12.2%)	5,997 (13.7%)	6,554 (14.2%)	7,401 (14.9%)	8,859 (16.1%)
수지차 ㉠-㉡	3,400	2,570	△1,069	△3,661	△15,356	△11,799	△6,138	△151	3,164	8,928	8,436
적립금 ㉣	52,829	55,398	54,329	50,668	35,311	23,511	17,374	17,222	20,385	29,313	37,749
적립배율 ㉣ / ㉡	2.77	2.43	2.00	1.57	0.77	0.57	0.41	0.39	0.44	0.59	0.69

자료 : 고용노동부

2. 고용보험기금 관리 문제³⁾

(1) 전문인력 확충 문제

- 자산운용팀 7명(재무리스크 관리 전문인력 3명)

(2) 자산운용방식 개선 문제

-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기관 위탁관리문제: 1개(한국투자증권)(2015-)
 - * 2013-14: 11개 (*산재보험- 삼성자산운용)
- 낮은 수익률 : 고용보험 기금 2015년 여유자금⁴⁾ 규모 7조7779억 원, 전체기금 중 비중 1.353, 수익률 2.53%
- 나아가, 자산운용기관을 통제/모니터링 할 내부 전문인력 확보, 책임투자 정책수립, 자산배분 반영, 위탁운용사 선정 등 책임투자 실행체계 마련 필요

3) 산재보험 포함. 문진국 의원(새누리당, 국회 환노위), 고용산재보험기금 관리현황(고용노동부), 자산운용팀 인력현황 및 전담자산 운용체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기금분석(국회 예산정책처) 참조.

4) '기금 여유자금'이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산 포함)을 말함.

3. 일자리 사업관련 고용촉진 보조금 등의 문제

- 고용촉진 지원금의 경우 2016년 예산 1013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취업 취약 계층을 고용한 사업체임. 그 영향은 수혜 사업장 중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절반이 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도 않음.⁵⁾
- 평가: 영세기업의 인건비 보조 역할
- 대안: 비정규직의 지원 충분 여부(사업주의 훈련의 경우 1.8%만 비정규직에 해당)

4. 기타 쟁점

■ 특수형태종사자⁶⁾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확대 추진- 대통령 공약(국정과제 이행)

- 고용보험 재정 악화, 특정 업종에 대한 부담 추가, 도덕적 해이 등의 검토 필요.

5) 윤희숙,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KDI, 2016.

6)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산재보험 적용대상 6개 직종-전속성 요건 요구)

합리적 고용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경영계 제언

이 상 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고용보험은 1995년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기업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표적 사회보험으로써 4대보험 중 가장 빠르게 정착

○ 고용보험(1995)은 산재보험(1964), 건강보험(1977), 국민연금(1988) 등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도입시기는 가장 늦은 반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되는데 소요된 기간은 3년 3개월에 불과

- 적용사업장 확대 소요기간 :

고용보험 3년 3개월(1995. 7월 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직능개발 70인 → 1998. 10월 1인 이상)

산재보험 36년 (1964. 7월 500인 이상 → 2000. 7월 1인 이상)

건강보험 24년 (1977. 7월 500인 이상 → 2001. 7월 1인 이상)

국민연금 18년 (1988. 1월 10인 이상 → 2006. 1월 1인 이상)

■ 또한 1995년 고용보험법 시행 당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용직, 시간제, 6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근로자와 자영업자도 2015년 현재 고용보험에 당연 또는 임의가입이 가능해 사실상 모든 계층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 법제정 이후 제도가 점차 확대되면서 2015년 현재 고령근로자 (60세 이후 신규 고용 제외 → 2013년부터 65세 이후 신규고용 제외), 시간제근로자 (소정근로시간 3할 이상 짧은 자 제외 → 現 주 15시간 미만 제외), 일용근로자 (2004년부터 당연가입), 자영업자(2012년부터 임의가입) 등 대부분의 계층이 고용보험법 수혜대상에 포함

-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초단기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보충적 소득활동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취업활동이 적용대상임.

■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급여체계, 허술한 자격 및 수급관리, 도입취지에 어긋난 기금활용 등으로 인해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이 점차 악화되는 추세

-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급여체계) 현행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하한기준(=최저임금×소정근로시간×90%)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실업급여기금 여건과 관계없이 급여 하한선이 상승하면서 구직급여 지출이 자연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 특히 최근 최저임금이 매년 7~8%씩 인상되고 있어 실업급여 하한액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재정부담 역시 가중 (2014년 현재 전체 수급자의 67%가 하한선이 적용되는 기형적 구조)

- ※ 급여구간별 수급자 분포(2014) : 하한구간 67%, 중위구간 4.5%, 상한구간 28.5%

- 한편, 구직급여 하한선은 고용보험법에, 구직급여 상한선은 동법 시행령에 각각 규정되어 노동시장 상황, 고용보험기금 여건 등을 감안해 급여 구간이 탄력적으로 결정되기 힘든 구조

- ※ 2014년 노사정은 기금안정성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구직급여 상한선을 높이고 하한선을 낮추기로 합의하였으나, 2015년 상한선만 40,000원 → 43,000원으로 인상됐을 뿐, 하한기준의 하향조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이로 인해 올해 구직급여 하한액은 43,416원(6,030원×8시간×0.9)으로 상한액(43,000원)을 역전하며, 구직급여가 정액(43,416원)으로 규정되는 상황 초래

- 또한, 낮은 보험료 부담에 비해 매우 높은 급여수급이 가능한 구조여서 단기취업 및 이직이 반복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활동보다 실업상태를 선호토록 하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

- ※ 올해 최저임금(2015년 5,580원)을 받는 주40시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최소 6개월(180일) 동안 가입한 경우 보험료 본인부담액은 총 45,482원⁷⁾에 불과한 반면, 실업급여는 최소 3개월(90일) 동안 총 3,615,840원⁸⁾을 수급 가능(근로자 본인부담액 대비 79.5배)

7) 45,482원 = 최저임금 5,580원('15년) × 209시간(주40시간 기준) × 실업급여요율 1.3% × 1/2(근로자부담) × 6개월(최소가입기간 180일)

- **(부실한 자격 및 수급관리)** 현재 단순히 명함 제출, 모집요강 복사 및 인터넷 화면 출력 등 형식적인 구직활동 만으로도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 동 구직자가 구인기업에 실제로 취업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어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발생⁹⁾

-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해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등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동 지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고용보험법 제60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임금(기존임금 대비 20% 이하)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등 근로유인효과도 매우 미흡

- **(모성보호비용의 고용보험기금 활용)** 모성보호사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대표적인 일반회계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사가 부담한 실업급여기금이 활용되면서 실업급여기금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비용은 2015년 기준 8,859억 원으로 실업급여 지출액(5조 4,978억원)의 16.1%에 육박하고 있으며, 2002년 지출액 257억원 대비 34.5배로 급증하였으나,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은 700억원(2014년)에 불과

- ※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억원) 추이: ('02년) 150 → ('03~'05년) 20 → ('06~'11년) 100 → ('12년) 150 → ('13년) 250 → ('14년) 350 → ('15년) 700

- 특히, 지난 2001년 국회 결의안은 매년 일정수준의 일반회계 지원은 물론, 향후 모성보호급여를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으로 이관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1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재한 상황

- **(고용보험기금이 정책자금으로 운용)** 정부 일반회계 사업과 고용보험기금사업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없어 정부는 일자리정책 및 국가고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용을 노사가 고용위기 시 사용토록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사례 1 : 한국잡월드)** 고용보험과 전혀 무관한 일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직업체험 및 직업탐색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국잡월드'를 설립하면서

8) 3,615,840원 = 최저임금 5,580원('15년) × 90% × 8시간 × 90일(최소수급기간)

9) **(사례)** 경력사원을 뽑기 위해 공고를 냈고 팬츠는 지원자가 있어 채용하겠다고 통보하자 “입사할 생각은 없고 다음에 오겠다”고 대답. 이유를 묻자 이 지원자는 “실업급여를 타려면 구직 노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온 것이지, 입사를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다”며 “실업급여를 최대한 타 먹고 좀 더 여행이나 다니다가 (팬츠는 회사에) 취직할 생각”이라고 대답 (한국경제, 2015.4.20.)

2009~2011년 간 고용보험기금에서 건물 신축비용으로 약 2007억 원 투입

- (사례 2 : 고용센터 인건비 고용보험기금 투입) 정부는 고용보험위원회 등 사전 심의절차 없이 2015년부터 고용센터 등 국가 고용인프라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투입

※ 2015년 485억 원 지출, 2016년 593억 원 예산 편성

- (사례 3 : 청년인턴제 사업비 기금 활용) 기존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던 기업 지원금(인턴의 정식채용 이전에 지급)이 노사의견 수렴과정 없이 2015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토록 변경하면서 기금부담이 800억 원 이상 증가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예산 추이 : (2014년) 824억 원 → (2015년) 1662억 원
→ (2016년) 1941억 원

- (특수형태종사자 강제가입 추진) 특수형태종사자는 소득활동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영업자로서 현행 자영업자 특례규정을 통해 임의가입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 계층에 대한 강제가입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일반근로자의 불가피한 실직에 대비코자 도입된 고용보험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강제적용의 실익도 없음.

- 지난 2015년 12월 30일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일을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한 것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반영

- (기업지배력 강화를 위한 책임투자 도입 추진) 고용부는 고용·산재보험기금에 책임투자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업현실과 관계없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기업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관치금융’ 논란이 불가피할 것임.

- (고용보험위원회의 명시적 의사결정권한 부재) 고용보험제도 및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구인 現 고용보험위원회는 명시적 의결권한이 없어 정부가 임의적으로 고용보험정책을 결정·변경하더라도 노사가 이를 통제할 만한 법적 권한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고용보험법 제7조: “이 법 및 보험료징수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로 규정되어 있어 심의권한만 있을 뿐 명시적 의결권한이 부재

■ 최근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에 제출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뚜렷한 지출절감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보장성 강화에만 치중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노사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

- 동 개정안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기간 30일 연장 (현행 90~240일 → 120일~270일) 등을 통해 향후 5년간(2016~2020) 총 5조 6227억 원(연평균 1조 1,2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그러나 2015년 현재 실업급여기금의 누적적립금은 약 3조7천원, 실제 적립배율은 0.69배로 법정적립배율(1.5배~2.0배)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현행 사업의 안정적 운영조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9.15 노사정은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에서는 모성보호비용 일반회계 지원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올해 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용을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

【표】 고용보험 실업급여기금 재정추이

(단위 : 억원, 배)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입(a)	25,412	26,063	28,629	29,938	29,787	35,738	43,709	49,220	58,566	63,412
지 출(b)	22,842	27,132	32,290	45,294	41,585	41,876	43,860	46,057	49,639	54,978
수지차(a-b)	2,570	-1,069	-3,661	-15,357	-11,798	-6,138	-151	3,164	8,928	8,436
연말적립금	55,398	54,329	50,667	35,310	23,510	17,373	17,222	20,385	29,313	37,749
적립배율	2.43	2.00	1.57	0.78	0.57	0.41	0.39	0.44	0.59	0.69

자료 : 고용보험백서, 고용보험 통계연보(각 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앞으로 고용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이 국가경제 및 노동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한편, 노동시장 활성화라는 고용보험의 기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체계로 재설계될 필요

-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병행한 법개정 추진) 고용보험법 개정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실직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함.
- (비용부담 및 급여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전제) 보험료 부담수준에 비해 과도한 보장성 강화보다는,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능력 및 기업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안정적 제도 운영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과정이 반드시 필요
- (가입대상은 피보험자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수급기간 종료 구직자 등 이른바 사각지대로 불리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동 계층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호방식(사회보험 vs 공적부조), 비용부담능력, 제도수용의사, 보험료부담 및 급여체계 등을 검토할 필요
- (고용유인형 지출시스템 정착)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ex 급여하한의 최저임금 연계방식 폐지 등), 적극적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
- (고용보험과 일반회계간 역할 분담기준 마련) 모성보호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고용센터 운영비용 등 고용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가고용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근거를 명시해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노사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노사가 부담한 고용보험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정부가 정책강행(비정규직의 강제적인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한 기업 규제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노사주도형 거버넌스체계를 확립해야 함.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4길 38(북창동) 단암빌딩 별관 3층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